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서



교육과정부

은 계 중 학 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가. 목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에서 흡수·대체하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한다.

- 1)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 및 취미와 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 제공
- 2)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 창달
- 3)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극대화
- 4) 방과 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5)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화

나. 방침

- 1)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 3)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4)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 5) 학생의 건강권·휴식권·안전 등을 위해 정규 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22시 이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 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 7)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
※대면, 비대면, 블렌디드 프로그램 등 학교의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다. 전략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자율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라.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마. 연간 업무 추진 일정

사업 내용	세부실천내용	계획	시 기	대 상	비 고
기초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수요조사,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2회	12월,7월	전교생	
운영 계획 및 운영 규정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회	2월,8월	학운위	
프로그램 개설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회	2월,8월	학운위	개강 프로그램, 신설 프로그램 확정
강사선정, 임용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교의 장	2회	3월,8월	강사	강사 신규임용, 재임용
분기별 지도 계획 수립	분기별 지도 계획서 작성	2회	학기별	강사	지도강사가 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교원 연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관련 교원 연수	2회	3월,8월	교사	학급 담임에게 안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학부모 연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관련 학부모 연수	2회	3월,8월	학부모	가정통신문 배부
수강 안내 및 수강생 모집	활동 희망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2회	학기별	전교생	
수강료 징수	수익자 부담	2회	학기별	참가 학생	수납 기간은 1주일간
프로그램별 반 편성	출석부, 지도계획 작성	2회	학기별	강사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편성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의한 수업 실시	연중	연중	참가학생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운영 기간 조정
만족도 조사	학기별 활동 후 설문조사	2회	7월,12월	참가학생, 학부모	방과후학교 활동 참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교육활동 홍보	홍보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 활용	연중	연중	학생, 학부모	

바. 세부 추진계획

1. 방과후학교 운영 협의

- 1) 학교운영위원회 내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조직
- 2) 소위원회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수강료 책정 등 각종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
- 3)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위원 : 교감, 교육과정부장, 학부모 위원 2명

2. 운영 시기 및 대상

- 1) 운영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
 - 1학기 : 2024년 3월 ~ 2024년 6월
 - 2학기 : 2024년 9월 ~ 2024년 12월
 -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강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한다.

2) 운영시간 :

	▶2차시(90분) 수업
목, 금요일 방과 후 7,8교시	15:40~17:10(90분)

- 3) 운영횟수 : 학기별 10~12회(20~24차시) 실시 예정(1회 2차시 수업)
- 4) 대상 : 본교 재학생 중 희망자

3. 개설 프로그램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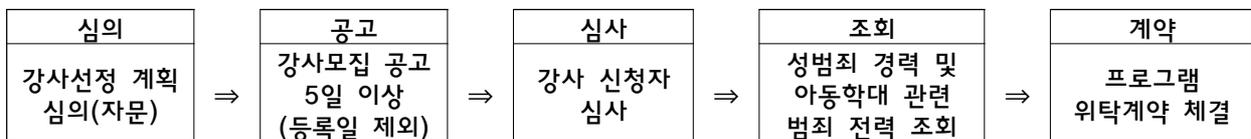
- 1) 기초조사를 통한 수요와 전년도 운영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학생의 희망에 따라 개강할 수 있도록 하며, 개강 프로그램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안내한다.
- 2) 수강 학생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15명 전후로 강좌의 특성에 맞춰 개설하고, 수강 신청 학생 인원수가 10명 이하일 때는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강사와 협의 시 소인수 운영 가능)
- 3) 교재 및 재료 선정 : 교재(교구) 및 재료에 관한 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프로그램별로 제출한 교재(교구) 및 재료 선정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또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에 따라 신고 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한다.
- 4) 2024년 개설 예정 프로그램

<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 >

강좌번호	강좌명	강사	대상	모집인원	수업내용	수업시간	수강료
1	농구반	외부강사	전체학년	15명 내외	기본기술 및 경기 기능 익히기	목 7,8교시 12회	추후공지 (840,000÷인원수)
2	기타기초반	외부강사	전체학년	15명 내외	기타 기본 코드와 여러 가지 연주법 배우기(개인 악기 준비)	금 7,8교시 12회	추후공지 (840,000÷인원수)
3	코딩기초반	외부강사	전체학년	15명 내외	알고리즘에 중점을 둔 코딩 배우기(재료비 별도)	목 7,8교시 12회	추후공지 (840,000÷인원수) +(재료비)
4	가야금연주반	외부강사	전체학년	15명 내외	가야금 기초 연주법 배우기 (악기 대여비 별도)	금 7,8교시 12회	추후공지 (840,000÷인원수) +(교재비)
5	제과제빵반	외부강사	전체학년	15명 내외	쿠키, 빵, 케익 만들기 (재료비 별도)	금 7,8교시 12회	추후공지 (840,000÷인원수) +(재료비)

4.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선정 및 임용

- 1)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방과후학교 활동 담당 강사 및 강사 의뢰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강사 선정 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 2) 강사의 자격
 - 관련 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해당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3) 강사 선정 절차



- 4) 위탁기간 : 1년 이내(실제 프로그램 운영기간으로) 계약 체결
- 5) 강사 재계약
 - :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일 경우 공모절차 없이 총 2년 미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2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6)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 선정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계약은 학교의 장과 강사 간 1:1로 한다.

- 7)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한다.
- 8) 특기적성 강좌의 경우 외부강사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의 선정이 어려울 시 (외부강사 지원이 없거나, 외부강사 심사 결과 평균 60%미만일 경우) 당해 학교 재직교원으로 임용한다.
- 9) 2학기에 1학기와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 시 기존의 학생들 대다수(80%이상일 경우)가 연계하여 수강하길 희망한다면, 해당 학생들의 프로그램 진도 관리를 위해 기존의 강사를 우선 채용한다.
- 10) 계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해지: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 학교장에 의한 해지 〈즉시 해지〉: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5.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 세부 절차

1) 평가위원

- ▶ 프로그램 운영 서류 심사위원: 교육과정부 부장 및 부원(총 3명)
- ▶ 프로그램 운영 면접 심사위원: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위원(총 4명)

2) 1학기 외부강사 채용 세부 계획

연번	일정	절차	추진 내용	담당자
1	2.16.(금)	학교운영위 심의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강사채용계획 포함) 심의	교육과정부장
1	3.7.(목) ~3.12.(화) 16:40까지	채용 공고 및 서류 접수	◦ 채용 공고 탑재 ▶ 은계중학교 홈페이지 ▶ 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접수 방법 서류접수 및 e-mail(eunkyems@korea.kr)접수 ◦ 제출서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공고 시 서식 첨부)	교육과정부장
2	3.13.(수)	1차 서류심사 및 1차 합격자 발표	◦ 서류 심사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가위원 평균이 60점(60%)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점 합산점의 고득점 순으로 2배수를 2차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함 ◦ 2차 면접 심사 대상자 개별 통보	교육과정부장 및 부원
3	3.14(목) 15:40	2차 면접 심사	◦ 2차 면접 심사 결과 평가위원의 평가점 평균이 100점 만점 중 60점(60%)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선발하지 않음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면접 심사 점수 합산점의 평균이 높은 순으로 필요 인원을 선발함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위원(교감, 교육과정부장 학부모위원 2명)
4	3.15.(금) 17:00 이후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담당자

※ 최종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 운영

6. 수강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1) 강사와 담당교사가 협의를 통하여 수강생 모집 안내서를 작성한다.
- 2) 수강생 모집 안내서와 신청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홍보한다.
- 3) 수강이 확정된 강좌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홍보한다.
- 4) 수강료 징수 방법 : 스쿨 뱅킹으로 수납

7. 프로그램별 반 편성 및 운영

- 1) 1개 반 15명 내외로 조직함을 기본으로 하나, 실기 위주의 수업은 강좌 담당 교사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인원수에 맞춰 조직한다.
- 2) 프로그램별 2개 반 이상 편성 시에는 수준별 또는 학년별 반 편성을 하여 운영한다.
-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 4) 원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한다.
 - ※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영상 등 콘텐츠(자체 제작 또는 공개된 학습 영상 등)는 당일 운영 시간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전에 운영계획서 제출

8.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한 지도 계획

- 1) 강사는 연간 지도계획 및 차시별 지도 계획안을 작성하여 담당교사의 사전지도를 받도록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 2) 관리자 및 담당교사는 수시로 교수·학습 현장을 참관하고 지도하며, 강사의 근무태도나 교육 방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한다.

9. 강사료

1) 강사료 지급(1차시)

강의 시간(1차시)	강사료(1차시)	비고
45분	35,000원	방과후 수업은 1회 2차시로 운영

2) 강사비 보전

- 방과후학교 개강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과후학교를 취소한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여 강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 수업료 책정 시 강사비를 신청 학생 인원수로 나눌 때 십 원 단위 아래로 나뉘어 수업료를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 십 원 아래 금액은 절사하여 수업료를 정산한다. 절사하여 부족하게 된 강사비는 강사 보전비에서 지급한다.
- 2024 학교 자체 예산 강사 보전비 확보 : 600,000원

3) 강사료 증액 지급: 협의를 거쳐 수강 인원수에 따라 강사료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0. 수강료

- 1)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으로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생 1인 부담액 : 반별로 인원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가)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나) 지원 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수습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및 난민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피해자, 탈북가정학생)
- 2순위 : 소득인정액 기준(증위소득 8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
-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라)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대상자 선정.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함.

마)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11.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 예방을 위한 교육

- 1) 학교는 국가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방과후학교 수업 또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 2) 방과후 수업 담당 교사 및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12.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제재

1) 방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또는 상습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방과후학교 수업에 불참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함.
- 별도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지도 대책 및 제재 기준

- 상담 및 통보
- 방과후학교 수업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에 3회 연속 불참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상담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림
- 상담 지도 후에도 불참할 경우, 방과후수업 참여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유선, 문자 등을 통해 알림
- 제재 사실을 알린 뒤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방과후수업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3) 제재 기준

- 방과후학교 지원학생의 결석일수가 특별한 사유(병결, 수련활동 등) 없이 수강시간의 1/2이상일 경우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 제외
-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 제외 기간은 학년 구분 없이 다음 학기 1회로 함.

4) 후속 조치

- 제재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 및 성실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담 등의 지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13.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한 경우로 보는 경우
 - 수강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2)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에 공지함
- 3)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 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사. 방과후학교 안전교육

1. 교내 안전예방 및 대처 기본수칙

- 1)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며, 책임 있는 자(보건교사,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등)가 처리함.
- 2) 응급조치 및 피해자의 후송 등은 신속히 119에 연락하여 처리하고, 임장교사 혹은 담임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여 외상이 없더라도 진단 및 검사를 실시함.
- 3) 사고자가 의식이 없거나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부상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사고 발생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무리하게 이동시키지 말고 현장에서 전화로 119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름.
- 4)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보건교사 혹은 사고현장 관리교사는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확보하며,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들도 기록하게 하고, 아울러 교사의 직무수행과 사후조치 내용도 기록함.
 - 책임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과정을 아는 증인을 확보함.
 - 사고처리에 있어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운영(사고담당자 지정)함.
 - 사고처리 관련 사항은 학생의 친권자인 학부모(또는 보호자)와 직접 협의함.
(학부모 아닌 제3자 개입 시, 사고처리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음)

2.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교내·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3.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입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3. 학생이 지켜야 할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수칙

1) 학교 일상생활 안전수칙

- 복도로 통행할 때에는 교실문과 부딪히지 않도록 바깥 창문 쪽으로 통행
- 비나 눈이 온 뒤에 계단의 물기로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특별히 조심
-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는 가급적 계단 물청소를 하지 않도록 주의
- 난간 사이에 머리를 넣거나 난간을 잡고 서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창문에 매달려 있거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도록 지도
- 빠지려고 하는 창문이나 출입문 등은 즉시 수리하도록 안내

2) 이동시 안전 수칙

- 보행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 녹색불이 켜지기 전에 차도에 내려서지 말아야 하며, 녹색불이 켜진 뒤 바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함.
- 버스를 기다릴 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 있지 말고, 버스가 도착한 다음 차도로 내려감.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차도로 내려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됨.

3) 기술실 및 가사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실습실에서는 교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항상 정숙하며 장난을 하지 않음.
- 유리, 사기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했을 때 깨지거나 금이 가기 쉬우므로 안전하게 취급하고 보관함.
- 가사 실습에서 음식 재료를 절단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재료를 주시한 후 정확히 절단함.
-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대 칼을 들고 장난치지 않도록 함.
- 가스를 켜기 전 후드를 켜서 환기를 시키거나, 후드가 없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킴.
- 가사 실습 시 불의 양을 조절할 때에는 작은 불부터 조금씩 올리도록 함.
- 가사 실습에서 기름이나 물을 끓일 때에는 주변에 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음.
- 뜨거워진 요리 기구를 들고 장난치지 않도록 하고 뜨거운 것을 다룰 때는 항상 주의함.
- 수돗물이나 가스 등 각종 재료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며, 음식물 찌꺼기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함.

4.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시 계획

- 1) **(목적)**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방침)**

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음

나.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업무담당자, 담당 강사, 학생, 학부모 긴급소통체계(전화, 카카오톡) 구축
다. 원격 방과후학교 운영 상황이 발생 시 운영 프로그램, 활용 플랫폼 및 기기 보유 확인 등의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온라인 가정통신문, 긴급 소통체계로 안내

라. 원격 방과후학교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전송)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저작물 사용 시 유의점 등을 담당 강사와 정보 공유

마. 원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업 시 교권 침해, 학교폭력(사진 무단 캡처, 사이버 언어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교육 철저

바. 강사수당 지급은 (출근부 서명,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의 경우 사이트 접속시간 기록, 원격수업 사이트, 피드백 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함.

아. 평가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2.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3.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자. 기대 효과

1.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
3.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